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. 6. 24일 제정·운영해왔으나,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9조, 부칙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)
- 2)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: 대상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1조 ~ 제3조 생략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제5조 ~ 제22조 생략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이정균
연락처	(033) 330 - 2270